

대한 양계협회

소식

'91 제1차 이사회 개최

· 9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본회는 지난 1월2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9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0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와 협회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90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 ▲91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채란담당 부회장 선임 건 ▲급여규정 개정(안) 등이 부의되어 심의가 있었다.

91년 계군혈청검사 실시

종계장, 집단농장, 채란농장 대상

본회는 양계장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계군혈청검사사업소(실험실)를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설치키로 하였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실험기자재 및 기구일부를 설치하고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로 계군혈청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금년도 혈청검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등록된 종계장 및 집단양계단지, 채란양계장의 계군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할 질병은 추백리, 만성호흡기병, 뉴캐슬병, 산란저하증 '76,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 F낭염 등 6개 질병이다.

또 검사농장에서 필요한 경우 사양환경, 질병관리, 사육자 기술, 세균 및 기생충 검사, 사료 및 식수 위생검사, 병성감정, 병계 부검검사 등을 조사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의견을 첨부한 결과를 대상농장에 개별통보하여 자율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검사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종계장은 양계농가가 병아리 구입시 참고하도록 홍보키로 하였다.

혈청검사를 희망하는 양계장은 2월28일까지 본회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본회 총무부로 연락바란다.

본회 건설부에 축사표준설계도 이용 질의 표준설계도 임의변경 건축허가 불가

본회는 지난 12월28일 건설부에 축사표준설계도 이용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축사표준설계도를 이용함에 있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 지형, 지세 등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표시된 규격대로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 건축면적을 변경하거나 내부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건설부는 표준설계도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본회 질의와 건설부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 질의

가. 양계장의 경우 1만수 규모로 육추사, 육성사, 산란계사로 구분되어 표준설계도가 작성 보급된바 농가가 이를 이용코자 할시 부지가 맞지않아 표준설계도상에 표기된 가로와 세로의 길이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바 이러한 경우 설계도를 변경하지 않고 부지의 여건에 따라 설계도에 표기된 총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조정(표준설계도상에 변경된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표기)하여 건축코자할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양계장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때 전항과 같이 부지의 형태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표기된 규격대로 설치가 불가능 할시 설계도를 변경하지 않고 총면적을 감축(표준설계도에 변경된 가로와 세로의 길이와 총면적만 표시하고 기타 사항은 변경없음)하여 건축코자 할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양계장의 경우 유형별(육추사, 육성사, 산란계사) 표준설계도상에 사육시설인 빠다리, 케이지 등 내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닭의 경우 빠다리, 케이지 등을 설치하지 않고 평사에서 사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바 이러한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거 허가를 받아 표준설계도대로 건축을 한후 내부시설은 필요가 없으므로 표준설계도대로 내부시설을 하지 않을시 준공필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축사표준설계도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할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정을 하여야 한다면 누구(허가청의 담당공무원 또는 설계사무소의 설계사 등)를 지정하여야 되는지?

○건설부, 회신

표준설계도서는 표준설계도서 운용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이미 인정된 표준설계도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 및 준공필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본회 의견 제출
1일 1회 이상 축분수거는 불가능

본회는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7일 환경처에 제출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54조 생활악취 대상시설 등의 조항에 축산업의 경우 “▲1일 1회 이상 축분을 수거하여 퇴비화시설 등으로 이송 처리할것, ▲1일 1회 이상 세척수로 축사바닥 청소를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현재 축산업이 처한 현실여건으로 보아 축산시설내에서 나오는 냄새를 완전 제거토록 규제한다면 축산업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산업은 냄새에 대한 규제대상이 아닌 지도대상으로만 조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양계업은 케이지사와 평사로 구분, 사육되고 있어 평사에서는 깔짚을 깔고 사육하므로 닭을 입추한 후 사육하는 동안 깔짚만 교체 보충해 주면서 사육하고 있으며, 케이지사육의 경우도 계분만 수시로 제거할 뿐 물청소는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물청소는 전연 할 수 없으므로 1일 1회 이상 세척수로 축사바닥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고하고 규제한다면 양계업은 전면 폐업하거나 행정당국과 분쟁만 야기될 우려가 있을 뿐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1일 1회 이상 축분을 수거하도록 하는 규정은 주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며, 1일 1회 이상 세척

수로 축사바닥 청소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활악취 대상시설 규제기준 및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시설(업)	규제기준 및 규제내용
농수산물 도매 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장을 최대한 밀폐할 것. ○수집쓰레기(찌꺼기)를 조속 처리할 것 ○쓰레기 적환장을 밀폐할 것 (가림막 또는 컨테이너 박스 설치) ○물청소를 수시 실시할 것 ○탈취제를 살포할 것. ○청소 및 세륜 세차수 전부를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것 ○오·폐수처리장은 최대한 밀폐할 것.
도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의 차량대기소(계류장)를 설치할 것.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세차를 실시할 것. ○작업장 밀폐후 탈취탑을 설치·운영할 것. ○밀폐된 우·돈분 저장소를 설치하고 당일 처리할 것. ○물청소를 수시 실시하고 탈취제 살포할 것. ○천막덮개를 밀폐시켜 악취비산을 방지할 것. ○세척수는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것.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할 것. ○탈취제를 살포할 것. ○1일 1회이상 축분을 수거하여 퇴비화시설 등으로 이송 처리할 것. ○1일 1회이상 세척수로 축사바닥 청소를 실시할 것.

계인 스스로 수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계분이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으나 양계장에서 처리여하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계란자동판매기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어 계란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2월 채란분과위원회는 구정연휴로 인해 본회 정기총회와 같은 날인 2월 26일 오후 1시에 개최키로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전국적으로 호흡기질병 만연



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연초 육계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로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호흡기질병(IB, ILT)의 만연으로 후기발육시 폐사가 많고 또한 강추위로 인해 육계가 자라지 않아 출하 일령이 7일 정도 지연되어 생산량이 20% 정도까지 감소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세미가 하이보다 더 낮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질병이 계속되는한 육계시세는 쉽사리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채란계 사육수수 증가추세

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북지방의 산란계 사육수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고 분석하고 이 때문에 전주 등지에서 서울로 계란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난가는 구정전까지 강세를 유지하다가 구정 이후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채란계 사육수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양

91년도 정기총회 2월26일로 확정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본회 91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2월26일 오후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1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채란담당 부회장 보선, 고문추대건 등이 부의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서산육계분회 임원개선 분회장에 이연중씨

서산육계분회는 지난 10일 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새로 개편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이연중
- 부회장 : 김종철, 조양호, 전중수
- 총무 : 김광옥
- 감사 : 조만호, 박경선
- 고문 : 유길동, 김연규, 최진환

운천산란분회 임원개선 분회장에 김정식씨

운천산란분회는 지난 17일 총회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김정식
- 부회장 : 지충웅
- 이사 : 배수명, 이천수, 천용수, 이화성
- 감사 : 장동수, 갈창업

이천채란분회 임원개선 분회장에 공호식씨

이천채란분회는 지난 17일 총회를 갖고 임원을 개선했다. 한편 전병훈 전임 분회장과 정광면 전임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새로 개편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공호식
- 부회장 : 정광면, 김주용
- 총무 : 이태용
- 감사 : 정해인, 김교석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 개최 지부장에 안명수씨 유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지난 12월28일 광주 YMCA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 3년의 임원선임이 있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 안명수
- 부지부장 : 허인구, 김상현, 박근신
- 상무 : 윤석현
- 채란분과위원장 : 최정수
- 육계분과위원장 : 김복천
- 종계분과위원장 : 송두진

광주채란분회 사무실 이전

광주채란분회(분회장 최준구)는 지난 23일 광주지구 축협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주소 :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23-5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내)
- 전화번호 : (0347)62-0978

**본회 닭경쟁능력 검정소 전화번호가
오는 2월 26일부터 변경된다.**

0334) 675-7139